

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조례상 자활기금의 운용 용도를 보다 세분화하고 지원대상에 자활근로사업단을 추가하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기금의 지원대상에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추가(안 제4조, 제5조, 제8조, 제10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,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 중 “자활기업 사업자금”을 “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자활기업”을 “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자활기업”을 “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제4조”를 “제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”를 “(사업자금 대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”을 “사업자금”으로, “1억원의 범위내”를 “1억원,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당 5천만원의 범위 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활기업은 1년거치 4년내”를 “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거치 4년 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납기일로”를 “납기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활기업”을 “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자활기업”을 각각 “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호 중 “담당”을 “담당계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1. ~ 3. (생략) 4. 법 제18조제3항제1호 따른 <u>자활기업 사업자금</u> 대여 5. ~ 8. (생략) 9. <u>자활기업</u> 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대여 ② (생략)	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 ----- 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</u> -- 5. ~ 8. (현행과 같음) 9. <u>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지원대상)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, 기관,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법 제18조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31조에 따른 <u>자활기업</u> 3. ~ 5. (생략) 6. 제4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	제5조(지원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<u>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</u> 3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제4조제2항</u> ----- ----- -----

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(다만, 방송통신, 학사고시,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)

② (생략)

제8조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 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,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.

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거치 4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.

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,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. 이 경우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사업자금 대여) ① -----

-- 사업자금 -----
----- 1억원,
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당
5천만원의 범위 내-----
-----.

② -----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거치 4년 내 -----
-----.

③ -----

-----.
----- 납기일-----
-----.

④ -----
--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

는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제10조(전세점포 임대지원) 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세점포 지원대상은 <u>자활기업</u> 중에서 점포(사업장)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(생략) ③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차하여 <u>자활기업</u>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한다. ④ ~ ⑥ (생략) 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)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 1. (생략) 2. 기금출납원 : 기금별 업무 <u>담당</u>	<u>활근로사업단</u>----- ----- ----- 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전세점포 임대지원) ① -- ----- ----- <u>자활기업 및 자활</u> <u>근로사업단</u>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자활기업 및</u> <u>자활근로사업단</u>----- -----. ④ ~ ⑥ (현행과 같음) 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담당</u> <u>당계장</u>
--	--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,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(이하 이 조에서 "법인등"이라 한다)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 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5.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 운영 지원

6.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

②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지역자활센터의 설립 운영 비용 또는 제 1항의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2. 국유 공유 재산의 무상임대
3.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

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

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적립금액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9. 7. 16.]

소관 실·과		생활안정과
입 안 자	과 장	권 혁 성
	담 당	최 정 란
	담 당 자	김 태 근 (480-2763)